

技術顧問役務に関する委託契約書 기술고문역무에 관한 위탁 계약서

〇〇会社〇〇〇〇 (以下「甲」という)と玄海農財通商合同会社 (以下「乙」という)は、甲の技術顧問に関する役務の委託に関し、次のとおり契約 (以下、「本契約」という)を締結する。

〇〇회사〇〇〇〇 (이하 '갑' 이라 한다) 과 현해농재통상합동회사 (이하 '을' 이라 한다) 는 갑의 기술고문에 관한 역무의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이하 '본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다.

第1条 (目的) 甲は乙に対し、技術顧問に関する役務およびこれに付帯する役務 (以下「本件役務」という)を委託し、乙はこれを受託する。

②本件役務の範囲・提供方法・情報提供および報告の頻度・成果物の作成および検査方法は別紙仕様書に記されたものとする。

제 1 조 (목적) 갑은 을에게 기술고문에 관한 역무 및 이에 부수하는 역무 (이하 '본건 역무'이라 한다) 을 위탁하고, 을은 이를 수탁한다.

②본 역무의 범위, 제공방법, 정보제공 및 보고의 빈도, 결과물의 작성 및 검사방법은 별지 사양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따른다.

第2条 (契約期間) 本契約の有効期間は、契約締結日より1年間とする。

②本契約の延長については、契約満了の1か月前までに甲および乙 (以下、「当事者」という)が協議のうえ、月額報酬および契約期間を取り決めるものとし、別途書面にて契約を締結する。

제 2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본 계약의 연장에 대해서는,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갑과 을(이하 "당사자"라 한다)이 협의하여 월당 보수 및 계약기간을 정하여 별도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第3条 (報酬および支払) 本契約に基づく月額報酬は金X万円 (消費税込)とする。

②本件役務にかかる交通費等の経費は、原則として甲が実費を負担するものとする。なお、経費負担の範囲に関しては、別紙仕様書に記されたとおりとする。

③甲は、本条に定める月額報酬および経費を、乙の発行する請求書に基づき、翌月末までに乙の指定する銀行口座への振込みにより支払うものとする。なお、振込にかかる手数料は甲の負担とする。

제 3 조 (보수 및 지불) 본 계약에 따른 월 보수는 금 X만엔(소비세 포함)으로 한다.

②본건 역무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갑이 실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경비 부담 범위에 관해서는 별지 사양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따른다.

③갑은 본 조에서 정한 월당 보수 및 경비를, 을이 발행하는 청구서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을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한다. 또한, 송금에 필요할 수수료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第4条 (資料・機器等の取扱い) 乙は、甲から貸与された資料・機器等 (以下、「資料」という)がある場合、本件役務以外の用途に使用してはならず、日本国民法第400条に定める善良なる管理者の注意義務をもって使用・保管・管理するものとする。

②貸与された資料が不要となった場合、本契約が解除された場合、または甲からの要請があった場合は、乙は貸与された資料をすみやかに甲に返却するものとする。

제 4 조 (자료 및 기기 등의 취급)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받은 자료 및 기기 등(이하 '자료'라 한다)이 있는 경우, 본건 역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일본국 민법 제400조에서 정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사용,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농해농재통상 서식 2호)

② 대여받은 자료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또는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을은 대여받은 자료를 신속히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第 5 条 (機密保持) 機密情報とは、有形無形を問わず、本契約に関連して当事者から他方当事者へ提供された技術上、営業上、人事上その他業務上の一切の知識および情報を意味する。

②当事者は、機密情報の取扱いに関する契約(以下、「秘密保持契約」という)を本契約とは別に締結することとする。機密情報の具体的範囲は、秘密保持契約で定めるところによる。

③本契約の締結以前に別に秘密保持契約が締結されている場合、当事者の合意により有効な秘密保持契約とみなす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仕様書にその旨を明記する。

제 5 조 (기밀유지) 기밀정보의 정의는, 유형, 무형을 불문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한 기술상, 영업상, 인사상, 기타 업무상의 모든 지식 및 정보를 가리킨다.

②당사자는 본 계약과 별도로 기밀정보의 취급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이라 한다)을 별도로 체결한다. 기밀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비밀유지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본 계약 체결 이전에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이 체결된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유효한 비밀유지계약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양서에 그 취지를 명시한다.

第 6 条 (成果の権利および知的財産権の帰属) 本件役務に基づき乙が甲のために作成した成果物(中間成果物も含む)および役務提供の結果発生した著作権およびその他の無体財産権は、本契約の前に乙が既に保有するものを除き、すべて甲に帰属し、その権利は乙から甲に無償で譲渡されるものとする。

②前項の規定に従って乙から甲に譲渡される権利は、著作権法第27条(翻訳権、翻案権等)および第28条(二次的著作物に関する原作者の権利)に規定される権利も含むものとする。

③乙は、成果物に対する著作者人格権の権利を行使しないことを合意する。

④乙は、甲の書面による承諾を得るかもしくは別途、合意をしなければ、成果物の全部あるいは一部およびその複製物を保有し、利用することはできないものとする。

제 6 조 (성과물의 권리 및 지적재산권의 귀속) 본건 역무에 따라 을이 갑을 위해 작성한 성과물(중간성과물 포함) 및 역무제공의 결과로 발생한 저작권 및 기타 무형재산권은 본 계약 이전에 을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갑에게 귀속되며, 그 권리는 을로부터 갑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을이 갑에게 양도하는 권리에는, 일본국 저작권법 제27조(번역권, 개작권 등) 및 제28조(2차적저작물에 관한 원저작자의 권리)에 규정된 권리도 포함된다.

③을은 성과물에 대한 저작인격권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④을은 갑의 서면 승낙을 얻거나 별도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성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복제물을 보유, 이용할 수 없다.

第 7 条 (権利の侵害) 乙は、本件役務を行なうにあたり、第三者の権利を侵害しないよう留意するとともに、乙が甲のために作成した成果物(中間成果物も含む)および役務の提供の結果について第三者との間で紛争が生じた場合、乙は、自己の責任と負担において処理・解決するものとする。

제 7 조 (권리 침해) 을은 본건 역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을이 갑을 위해 작성한 성과물(중간성과물도 포함) 및 역무 제공 결과에 대해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을은 자기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고 해결한다.

第 8 条 (報告義務) 乙は、甲の請求があるときは、口頭または書面にて遅滞なく本件役務の遂行状況を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本件役務の遂行に支障を生じるおそれのある事故の発生を乙が知った場合、乙は、その事故の帰責の如何にかかわらず、その旨をただちに甲に報告し、甲と今後の対応方針についての協議を行なうものと

(농해농재통상 서식 2호)

する。

제 8 조 (보고 의무)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본 역무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 역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의 발생을 을이 알게 된 경우, 을은 그 사고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며, 갑과 향후 대응방침에 대해 협의한다.

第 9 条 (再委託) 乙は、甲による事前の承諾がないかぎり、本件役務の全部または一部を第三者に再委託できない。なお、甲の事前の承諾を得て第三者に再委託する場合には、乙は当該第三者に対し、本契約における乙の義務と同様の義務を遵守させ、その行為について一切の責任を負う。

제 9 조 (재위탁)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이 없는 한, 본건 역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또한, 갑의 사전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재위탁할 경우, 을은 해당 제3자에게 본 계약에서의 을의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그 행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

第10条 (権利義務譲渡の禁止) 乙は甲の事前の書面による承諾がないかぎり、本契約の地位を第三者に継承させ、あるいは本契約から生じる権利義務の全部または一部を第三者に譲渡もしくは引受けさせまたは担保に供してはならない。

제10조 (권리 의무 양도의 금지) 을은 갑의 사전 서면 승낙이 없는 한, 본 계약의 지위를 제3자에게 승계시키거나,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인수하게 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第11条 (解除) 当事者は、以下のいずれかの条項に該当する事由があるときは、何らの催告なしに本契約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る。

- ①当事者が振り出した手形または小切手が不渡事故を起こしたとき。
- ②当事者に差押え、仮差押えまたは競売の申し立てがあったとき、もしくは租税滞納処分を受けたとき。
- ③当事者が破産、会社整理開始、会社更生手続開始または民事再生手続開始の申し立てがあったとき、もしくは清算に入ったとき。
- ④当事者の解散もしくは営業の全部または重要な一部を第三者に譲渡しようとしたとき。
- ⑤当事者が本契約に基づく事項を履行せず、相手方が相当の期間を定めて催告をしたにもかかわらず、なおその期間内に履行しないとき。

제11조 (해지)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어떠한 독촉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당사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에 부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 ② 당사자에게 압류, 가압류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거나 조세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③ 당사자가 파산, 회사정리 개시, 회사회생 절차 개시 또는 민사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 절차를 개시한 경우.
- ④ 당사자가 해산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 ⑤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第12条 (反社会的勢力の排除) 当事者は、それぞれ相手方に対し、次の各項の事項を確約する。

- ①自らが、暴力団、暴力団関係企業、総会屋もしくはこれらに準ずる者またはその構成員（以下、「反社会的勢力」という）ではないこと。
- ②自らの役員（取締役、業務執行社員、またはこれらに準ずる者をいう）が反社会的勢力ではないこと。
- ③反社会的勢力に自らの名義を利用して、この契約を締結するものではないこと。
- ④本契約期間が終了するまでに、自らまたは第三者を利用して、本契約に関する次の行為をしないこと。

(농해농재통상 서식 2호)

ア 相手方に対する脅迫的な言動または暴力を用いる行為

イ 偽計または威力を用いて相手方の業務を妨害するか、あるいは信用を毀損する行為

⑤当事者の一方が次のいずれかに該当した場合には、相手方は何らの催告なしに本契約を解除できる。

ア 本条①項または②項の確約に反する申告をしたことが判明した場合

イ 本条③項の確約に反して本契約を締結したことが判明した場合

ウ 本条④項の確約に反した行為をした場合

⑥前項の規定により本契約が解除された場合、解除された当事者が解除に伴い発生した損害について、その相手方に対し一切の請求を行わないこととする。

제12조 (반사회적 세력의 배제) 당사자는 각 상대방에게 다음 각 항의 사항을 확약한다.

① 자신이 조직 폭력단, 조직 폭력단 관련 기업, 총회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 또는 그 구성원(이하 '반사회적 세력'이라 한다)이 아님을 확인한다.

② 자신의 임원(이사, 업무집행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함)이 반사회적 세력이 아닐 것.

③ 반사회적 세력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시켜서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닐 것.

④ 본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본인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본 계약에 관한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
가. 상대방에 대한 위협적인 언동 또는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

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⑤ 당사자 일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은 어떠한 독촉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본조 ①항 또는 ②항의 확약에 위배되는 신고를 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나. 본조 ③항의 확약에 반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 것이 판명된 경우.

다. 본조 ④항의 확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⑥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된 당사자가 해지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상대방에게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第13条 (免責) 乙は甲に対して、本件役務に関して何らかの結果を保証するものではなく、また、乙に故意または重大な過失がある場合を除き一切の責任を負わないものとする。

제13조 (면책) 을은 갑에 대하여 본 업무과 관련하여 어떠한 결과도 보증하지 않으며, 또한 을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第14条 (協議事項) 本契約に定めなき事項または解釈上疑義を生じた事項については、法令に従うほか、当事者が誠意をもって協議のうえ解決をはかるものとする。

제14조(협의사항)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의문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르는 것 이외로,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결한다.

第15条 (疎通方式) 本契約書に基づくすべての通知、同意およびその他連絡（以下、「疎通」という）は、以下の方法で行うものとする。

(1) 当事者が他方当事者に直接交付したとき

(2) 日本郵政株式会社または大韓民国郵政事業本部による配達証明付き国際スピード郵便（以下、「国際スピード郵便」という）で送付したとき

(3) 開封通知付き電子メールで送付したとき

②疎通は、国際スピード郵便においては当事者への配達証明書が他方当事者に交付されたときであり、電子メールにおいては当事者が開封したことを他方当事者に電子的に通知したときまたは返信した場合に完了したとみなす。

③直接交付における受領拒絶、国際スピード郵便における受領拒否、または住所または電子メールアドレスが他方当事者への通知なしに変更されたことにより送付できなかった場合は、疎通が完了したとみなす。

④当事者が電子メールにより疎通を図った場合において、他方当事者が開封通知または返信を送らなかったときは、当事者の送信後 7 日の経過をもって疎通が完了したとみなす。

(농해농재통상 서식 2호)

제 15 조 (소통방식) 본 계약서에 따른 모든 통지, 동의 및 기타 연락(이하 "소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 (1)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직접 교부한 경우
 - (2) 일본우편주식회사 또는 대한민국 우정사업본부가 배달증명서를 첨부한 국제특급우편(이하 "국제특급우편"이라 한다)으로 송부한 경우
 - (3) 개봉통지서를 첨부하여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 ②국제특급우편에 있어서는 당사자에게 배달증명서가 상대방에게 교부된 때, 전자우편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개봉하였음을 상대방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한 때 또는 회신한 때에 송통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③직접 교부의 경우의 수령거부, 국제특급우편의 수령거부 또는 주소 또는 전자우편 주소를 상대방에게 통보 없이 변경되어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통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④당사자가 전자우편으로 소통을 시도한 경우, 상대방이 개봉통지 또는 회신을 보내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발송 후 7 일이 경과한 시점에 소통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第16条 (合意管轄) 前条によっても紛争が解決されない場合、本契約に関連する一切の訴訟管轄は、当事者のうち訴訟を提起した側の住所を管轄する裁判所とする。

제 16 조 (합의관할) 전조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 비밀유지계약과 관련된 모든 소송 관할은, 당사자 중 소송을 제기한 측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以上、本契約の成立を証すため、本書 2 通を作成し、甲乙記名捺印のうえ各 1 通を保管する。

이상과 같이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계약서 2통을 작성하며, 갑과 을의 기명 및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契約締結日 계약체결일 20XX年년XX月 월XX日 일

甲갑 : ○○회사 ○○○○
(○○会社○○○○)
○○도○○시○○로 XXX 번길 XX
(○○道○○市○○路 XXX 番ギル XX)

代表대표 ○○○ (인 또는 서명)

乙을 : 玄海農財通商合同会社
(현해농재통상합동회사)
福岡県福津市中央5丁目6-30
(후쿠오카현 후쿠츠시 중앙 5 가 6 번 30 호)

이시자카 야키라 (인 또는 서명)
代表 石坂 晃 (印または署名)

別紙仕様書별지 사양서

1 本件役務の範囲および役務の遂行方法について（本契約第 1 条関連）

1. 본건 역무의 범위 및 역무의 수행방법(본 계약서 제 1 조 관련)

(1) 委託役務の範囲 위탁 역무의 범위

乙が提供する下記の委託業務類型のうち、甲は____、____、____を選択するものとする。

을이 제공하는 아래의 위탁업무 유형 중, 갑은____,____,____를 선택한다.

ア 一般動向調査 가. 일반동향조사

甲が製造または販売している商品やサービスについて、日本での市場性および類似品の動向等を乙が新聞、書籍、インターネット等で得た情報を整理することを指す。

갑이 제조 또는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본에서의 시장성 및 유사제품 동향 등을 을이 신문, 서적, 인터넷 등으로 얻은 정보를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イ 簡易な法チェック 나. 간단한 법률 체크

韓国または日本の製品を輸出入または販売する場合に必要な法令上の情報を調査することを指す。ただし、申請書作成等、法的要件をクリアのため当局に提出する書類の作成は含まない。

한국 또는 일본 제품을 수출입 또는 판매할 때 필요한 법령상 정보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단, 신청서 작성 등 법적 요건 충족을 위해 당국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ウ 実需者への聞き取り 다. 실수요자 인터뷰

甲が製造または販売している商品やサービスについて、乙が実需者（農業者、農業技術に関係する公的機関の職員、他メーカー担当者、小売商など）に対して、対面、電話、電子メール等の方法で問い合わせを行うことを指す。

갑이 제조 또는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을이 실수요자(농업인, 농업 기술 관련 공공기관 직원, 다른 제조업체 담당자, 소매상 등)에게 대면,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문의하는 것을 말한다.

(2) 委託役務の提供方法（頻度・分量） 위탁역무의 제공 방법(빈도 및 분량)

ア 面談（1時間を目安に月2回・当事者の住所での対面およびウェブ会議の合計）

가. 면담 (1시간을 기준으로 월 당 2회, 당사자 주소지에서의 대면 및 웹미팅의 합계)

イ 提案書作成（月1回・4ページ<5000字程度>目安、甲の指定方式で作成して送付）

나. 제안서 작성(월 당 1회 /4페이지 <5000자 내외>기준, 갑이 지정한 방식으로 작성하여 송부)

ウ 面談および書面による提案を円滑に進めるためのメールまたは電話連絡（週2回を目安）

다. 면담 및 서면 제안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이메일 또는 전화 연락(주 1회 이상)

(3) 委託役務に関する報告の方法および頻度 위탁역무에 관한 보고의 방법 및 빈도

ア 本契約第 8 条 1 項の場合、1 - (2) - ウ記載のメールまたは電話連絡の中で随時行う。

가. 본 계약서 제 8 조 1항의 경우, 1.-(2)-다.항 기재된 이메일 또는 전화 연락 중 수시로 실시한다.

イ 本契約第8条2項で定められた「本件役務の遂行に支障を生じるおそれのある事故の発生を乙が知った」場合、乙が甲に対して遅滞なく連絡を行う。

나. 본 계약 제 8 조 2항에서 정한 '본 역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의 발생을 을이 알게 된' 경우, 을은 갑에게 지체 없이 연락을 취한다.

(4) 成果物の作成および検査方法 성과물의 작성 및 검사방법

ア 成果物の範囲：原則的に、本契約別紙仕様書1-(2)-イに記載した提案書を指す。両当事者の合意により、チラシ等の営業資料や取扱説明書等の技術資料の改定を成果物とみなすこともできるが、その提供方法は1-(2)-イで定めた基準の範囲内で行う。

가. 성과물의 범위 : 원칙적으로 본 계약서 별지 사양서 1.-(2)-나.항에 기재된 제안서를 말한다.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전단지 등의 영업자료 및 사용설명서 등의 기술자료의 개정을 산출물로 간주할 수 있으나, 그 제공방법은 1.-(2)-나.항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한다.

イ 成果物作成内容の決定：仕様書1-(2)-アの面談で当事者が相談、合意して決める。

나. 성과물 작성 내용 결정 : 사양서 1.-(2)-가.항의 면담으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ウ 成果物の検査は、原則的に以下の手順で進行する。

다. 성과물 검사는 원칙적으로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A 契約締結日以降最初に実施した面談から10営業日以内に甲が検査方法の原案を提示し、乙が5営業日以内に原案を検討したうえで修正の提案を行うことで、成果物素案送付日までに両当事者が合意した方法のみを成果物の検査方法とする。

A 계약체결일 이후 최초로 실시한 면담으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갑이 검사방법의 원안을 제시하고, 을이 5영업일 이내에 원안을 검토한 후 수정 제안을 하여, 성과물 초안 송부일 전까지 양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만을 결과물 검사방법으로 한다.

B 乙は、前項で決定した内容に基づき、面談から30日以内で成果物を作成し、甲に送付する。

B 을은 전항의 결정 내용에 따라, 면담 후 30일 이내에 성과물을 작성하여 갑에게 송부한다.

C 甲は、乙から送付された成果物を、1-(4)-ウ-Aで定めた方法で検査し、検査項目に従った修正意見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乙は5営業日以内に修正し、再送付する。

C 갑은 을이 송부한 성과물을, 1.-(4)-다.-A로 정해진 방법으로 검사하고, 검사 항목에 따른 수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5영업일 이내에 수정하여 재송부하여야 한다.

D 甲が成果物に関する修正意見を5営業日以内に述べなければ、検査に合格したと判断する。

D 갑이 5영업일 이내에 성과물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E 甲が検査方法を提示しない場合は、乙の成果物の提出をもって検査に合格したと判断する。

E 갑이 검사방법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을의 성과물 제출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2 本件役務に関する経費負担の方法 (本契約第3条関連)

2. 본건 역무에 대한 비용 부담 방법(본 계약 제 3 조 관련)

(1) 本契約に含まれる標準経費として乙が負担するもの

본 계약에 포함된 표준경비로서 을이 부담하는 것

ア 国内通信費 (乙が発出する電話・郵便<宅配料金含む>、インターネット利用料金等)

가. 국내 통신비(을이 발신하는 전화-우편<택배료 포함>, 인터넷 이용료 등)

イ 乙の住所で会議をする場合の諸費用

나. 을의 주소지에서 회의를 할 경우의 제반비용

ウ 乙が役務提供に関する情報収集を行う際に必要な調達に関する経費 (資料の購入、実需者訪問に係る経費等)

다. 을이 역무제공에 관한 정보수집을 할 때 필요한 조달에 관한 경비(자료 구입, 실수요자 방문에 관한 경비 등)

(2) 乙の実費精算に基づき甲が負担するもの 을의 실비정산에 따라 갑이 부담하는 비용

ア 甲の指定場所で会議 (以下、出張会議) する場合において、乙が公共交通機関を利用したときの交通費 (ただし、甲の住所での出張会議は、両当事者が事前に定めた移動方法とする)

가.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회의(이하 '출장회의'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을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의 교통비(단, 갑의 주소지에서 출장회의는 양 당사자가 사전에 정한 이동방법으로 함)

イ 出張会議に係る宿泊費 (ただし宿泊費上限は国家公務員旅費規程に定める宿泊料を準用)

나. 출장회의에 따른 숙박비(단, 숙박비의 한도는 일본 국가공무원 여비규정에 규정된 숙박비를 준용함)

ウ 事務消耗品費 (出張会議の時に、乙が大量の資料を持参する必要がある場合等を想定)

다. 사무 소모품비(출장회의를 할 때, 을이 대량의 자료를 지참해야 하는 경우 등을 상정)

※乙は、月ごとの実費精算時には支出の証拠となる領収証または支払請求書の写しを添付すること。

※을은 월별 실비 정산할 때, 지불 증거가 되는 영수증 또는 지급청구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乙の活動実績申告に基づき甲が負担するもの 을의 활동실적 신고에 따라 갑이 부담하는 사항

ア 乙の日当 (出張会議のときの乙の移動時間に関する補償) : 8時間 1万円、4時間 5千円

나. 을의 일당(출장회의를 할 때 을의 이동시간에 대한 보상): 8시간 기준 1만엔, 4시간 기준 5천엔

3 秘密保持契約の取扱い (本契約第5条関連) 3. 비밀유지계약의 취급(본 계약 제 5조 관련)

両当事者の合意に基づき、秘密保持契約の締結は、以下の _____ を選択するものとする。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비밀유지계약의 체결은 다음 중 _____ 를(을) 선택한다.

(1) 契約締結日付で有効な秘密保持契約を新規に締結する。

(1) 계약 체결일 부로 유효한 비밀유지계약을 신규로 체결한다.

(2) 過去に締結した秘密保持契約 (20XX年XX月XX日締結) のすべての条文を、本契約においても

契約締結日付で有効な秘密保持契約とみなす。

(2) 과거에 체결한 비밀유지계약(20XX년 XX월 XX일 체결)의 모든 조항을, 본 계약에서도 유효한 비밀유지계약으로 간주한다.

(3) 過去に締結した秘密保持契約（20XX年XX月XX日締結）うち、以下の条文を挿入・削除、または条文の記載内容を修正して、本契約においても契約締結日付で有効な秘密保持契約とみなす。

(3) 과거에 체결한 비밀유지계약(20XX년 XX년 XX월 XX일 체결) 중 아래 조항을 삽입, 삭제, 또는 조문의 기재 내용을 수정하여, 본 계약에서도 계약체결일 부로 유효한 비밀유지계약으로 간주한다.

ア 条文を挿入する場合 가. 조문을 삽입하는 경우

イ 条文を削除する場合 나. 조문을 삭제하는 경우

ウ 条文の記載内容を修正する場合 다. 조문의 기재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この契約書書式は、契約や納品に対する大まかなイメージをお客様に把握していただくことを目的としてPDF形式で提供しているものです。実際の契約に際しては、お問い合わせ後にWORD形式の契約書書式を別途お送りします。WORD形式の書式にお客様がお望みの事項をお書きになれる範囲でご記入頂き、弊社にご返送ください。

* 본 계약서 양식은 고객님의 계약 및 납품에 대한 대략적인 이미지를 파악하시기 위해, PDF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실제 계약 시에는 문의 후 WORD 형식 계약 서식을 별도로 보내드립니다. WORD 형식 서식에 고객님의 원하시는 사항을 작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 당사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